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 계 · 주의 요구

제 목 액비살포비지원사업 액비 살포량 산출 미흡 및 살포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공주시, 서산시, 부여군, 청양군

- 훈 계 대 상 자
- ① 충청남도 공주시 ○○○○과 지방○○지도사 ○○○
(전 ○○과)
 - ② 충청남도 공주시 ○○○○과 지방○○주사 ○○○
(전 ○○과)
 - ③ 충청남도 서산시 ○○과 지방○○주사 ○○○
 - ④ 충청남도 서산시 ○○과 지방○○주사 ○○○
 - ⑤ 충청남도 서산시 ○○○○센터 지방○○지도관 ○○○
 - ⑥ 충청남도 부여군 ○○과 지방○○주사 ○○○
 - ⑦ 충청남도 부여군 ○○과 지방○○주사 ○○○
 - ⑧ 충청남도 부여군 ○○읍사무소 지방○○사무관 ○○○
(전 ○○과)
 - ⑨ 충청남도 청양군 ○○○○과 지방○○주사 ○○○
 - ⑩ 충청남도 청양군 ○○면사무소 지방○○사무관 ○○○
(전 ○○○○과)

내 용

지방○○지도사 ○○○는 2016. 1. 11.부터 2016. 12. 31.까지, 지방○○주사 ○○○은 2016. 1. 11.부터 2016. 7. 16.까지 각각 충청남도 공주시 ○○과에서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업무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으며,

지방○○주사 ○○○은 2016. 1. 19.부터 2017. 7. 9.까지, 지방○○주사 ○○○은 2015. 4. 16.부터 현재까지, 지방○○지도관 ○○○은 2009. 1. 1.부터 현재까지 각각 충청남도 서산시 ○○과에서 액비살포비지원사업 업무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센터에서 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으며,

지방○○주사 ○○○은 2016. 8. 1.부터 현재까지, 지방○○주사 ○○○은 2016. 1. 1.부터 현재까지, 지방○○사무관 ○○○은 2015. 7. 1.부터 2016.12. 31.까지 각각 충청남도 부여군 ○○과에서 액비살포비지원사업 업무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로 근무하였으며,

지방○○주사 ○○○은 2016. 1. 1.부터 현재까지, 지방○○사무관 ○○○은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각각 충청남도 청양군 ○○○○과에서 액비살포비지원사업 업무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지원 지침」(이하 “사업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사업비 지원대상은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주체(시장·군수가 인증)로 되어 있다. 다만, 비료생산업체를 등록(가축분뇨 발효액)한 경우 시비처방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으며, ‘액비 품질 관리 및 시용량 산출’ 자료를 근거하여 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대상 사업자가 ‘액비 품질 관리 및 시용량 산출’ 자료 작성 시 토양검정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료 및 흙토람 자료를 활용하고, 살포량 산출은 액비와 토양검정치 결과 최소량 기준으로 산출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액비 살포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적정한 량의 액비를 살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업무담당 공무원은 사업지침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자가 액비 살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충청남도 공주시, 서산시, 부여군, 청양군에서 추진한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급 관련 자료를 정부합동감사 기간(2017. 11. 15.~12. 1.) 중 확인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개별 농경지에 대한 토양검정치 자료 없이 일정하게 액비 살포량을 산출하는 등 액비살포량 산출을 미흡하게 하거나, 액비를 과다하게 살포하는 등 지원사업 대상자가 액비살포를 부적정하게 이행하였다.

[표] 액비 살포량 산출내역 미흡 및 살포 부적정 현황

시군	일자	보조사업자	액비 살포량 산출 미흡 및 살포 부적정 내용
공주시	‘16.5.24	영농조합법인 ○○○ ○○	○ 토양검정치 자료 없이 질소질 기준으로 10a당 2.0톤의 액비 살포량 산출, 실제로는 3.6~3.7톤씩을 살포
	‘16.6.7	농업회사법인 ○○	○ 액비 질소질은 0.2~0.4%, 토양검정치 자료 없이 10a당 2.1톤의 액비 살포량 산출, 실제로는 4톤씩 일괄 살포
	‘16.6.7	농업회사법인 ○○○	○ 액비 질소질은 0.1~0.48%, 토양검정치 자료와 특정성분에 대한 기준도 없이 통합하여 액비 살포량을 산출, 10a당 4.6~5.3톤을 살포
서산시	‘16.8.2 (1차)	○○○○○○○ 영농조합법인	○ 토양검정치와 살포량산출 내역 없고, 2월말~3월말 경 ha당 10톤 정도의 액비를 살포함
	‘16.12.9 (2차)	○○○○○○○ 영농조합법인	○ 3월말~4월말 경에는 ha당 12톤 정도의 액비를 살포 - 액비 질소질 최저 0.024%, 최고 0.087%로 3.6배 차이

시군	일자	보조사업자	액비 살포량 산출 미흡 및 살포 부적정 내용
부여군	'16.12.7 (1차)	○○○○○○○ ○○법인	○ 요소비료 질소 성분함량 46%를 반영하지 않고 액비 살포량을 산출하여 2배 이상의 액비를 살포
청양군	'16.3.23 (1차)	○○○○○○○ ○○○센터(영)	○ 액비 살포량 산출기준 대비 초과 살포 한 것 62필지 - 50%이상 초과 살포 3필지, 100%이상 초과 살포 4필지
	'16.12.21 (3차)	○○○○○○○ ○○○센터(영)	○ 시비처방서 활용 미흡 - 2011년 분석 논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활용 36필지 - 2012년 분석 논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활용 35필지

그러나 위 관서들의 업무담당 공무원은 지원사업 대상자가 액비 살포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도나 시정조치 없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등 액비살포비 지원 관련 업무를 미흡하게 수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공주시장, 서산시장, 부여군수, 청양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대상자가 액비 살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액비살포 직전에 분석한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를 활용하여 액비 성분분석에 근거한 필지별 액비살포량을 정확하게 산출토록 하고, 필지별로 적정한 량의 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